

사단법인
한국융합기술연구학회
정관

2022. 12. 23.

사단법인 한국융합기술연구학회

사단법인 한국융합기술연구학회 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한국융합기술연구학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IT, BT, NT 산업의 인문 및 사회학적인 연구와 산업적인 기술융합을 연구, 보급하여 국제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회원 상호간의 협력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학회지 및 논문지 발간
2. 융합 연구 관련 국내 및 국제 학술회의 개최
3. 기술 융합 동향 발표회 개최
4. 국내 및 국제 학술연구 세미나 개최
5. 인문 및 사회학 기반 IT, BT, NT 융합산업발전에 관한 정책연구
6. 국내 대학 및 외국 대학과의 협력을 통한 국제학술교류
7. 인문 및 사회학 기반 IT, BT, NT 상품 수출촉진에 관한 연구
8. 인문 및 사회학 기반 IT, BT, NT 산업 발전에 기여한 단체나 개인의 포상
9. 기타 본회의목적달성에 적합한 사업

제4조 (본 회의 소재지)

본회의 본부는 대전광역시에 두며, 각 시도별 지회를 둘 수 있다.

2022년 5월 18일 이후 본부의 주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로316번길 30-5, 202호’로 한다.

제 2 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으로 구분하며, 회원이 되고자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절차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정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본회의 회원 자격 기준에 따라 특별 회원 및 일반 회원으로 구분하여, 회원이 선택하도록 한다.

1. 대학 또는 민간교육 교육기관에서 강의를 하는 자 또는 단체

2. 인문 및 사회학 기반 IT, BT, NT 마케팅 및 유통 관련업무 종사자 또는 단체
 3. 인문 및 사회학 기반 IT, BT, NT 산업과 기술개발에 관심이 많으며, 기업체 및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자 또는 단체
 4. 과학과 산업의 기술융합에 관심이 많은 자로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 또는 단체
- ② 준회원은 대학생, 학부모 등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③ 명예회원은 본 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지대한 자로 이사회에서 추대한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 ①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참여 할 수 있다. 다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은 정회원만이 가진다.
- ② 본 회의 회원은 회칙에 따른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소정의 입회비 및 회비를 납부하여야한다.

제7조 (회원의 자격 상실)

- ① 본 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 ② 본 회의 명예를 손상시킨 회원은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단, 회장은 차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1년 이상 회비를 체납한 자는 자동적으로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제 3 장 임 원

제8조 (임원의 구성)

본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공동회장 2명(1인은 학계, 1인은 산업계 인사), 단 우선 대표는 학계 회장으로 한다.
2. 수석부회장 1명 포함 부회장 4명 이하 (국내, 국제, 사업, 홍보 분야로 구분)
3. 상임이사 7명 이하 (총무, 국내학술, 국제학술, 사업, 편집 담당 등 포함)
4. 감사 1명

제9조 (임원의 선임)

- ① 외국인을 제외한 모든 임원은 정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 ② 내국인 및 외국인이 번갈아 가며 회장직을 수행하되, 내국인 회장은 이사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하며, 회장 선출방법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 ③ 부회장은 상임이사 중 회장이 지명한다.
- ④ 감사는 상임이사회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 ⑤ 상임이사는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 ⑥ 이사는 회장 및 상임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 ⑦ 한국인 회장은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차기 외국인 회장 및 내국인 수석부회장을 임명한다.

제10조 (임원의 직무)

- ①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총회,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통할한다. 단, 외국인 회장 재임 기간 중에는 수석부회장이 이를 대행한다.
- ② 부회장은 각 분야의 연구 활동, 개발 및 학회운영 활동에 관하여 각 분야별 업무를 담당하며, 회장을 보좌한다.
- ③ 상임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분야별 이사들과 함께 해당업무를 집행한다.
- ④ 감사는 본 회의 회계업무를 감사하며, 년 1회 이상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감사는 총회 및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은 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없다.

제11조 (임원의 임기)

- ①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8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회장 유고시는 상임이사 중에서 연장자순으로 대행하며 임기는 회장 임기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② 이사의 임기는 8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4 장 기 구

제12조 (기구의 종류)

본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 1. 총회
- 2. 이사회
- 3. 운영위원회
- 4. 집행위원회(총무위원회, 학술위원회, 사업위원회, 편집위원회)
- 5. 특별위원회는 필요시 설치 운영한다.
- 6. 사무국

제13조 (총회)

- ① 총회는 본 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한다.
 - 1. 정관의 개정
 - 2. 사업보고 및 결산의 승인
 - 3. 운영위원회가 상정하는 주요안건
 - 4. 각 집행위원회와 회원이 상정하는 주요안건
 - 5. 기타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중요사항

-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정기총회는 연 1회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이사회 의결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임시총회는 회장의 요구 또는 이사회 의결이 있을 때 또는 정회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소집할 수 있다.
- ③ 총회는 위임받은 경우를 포함하여 정회원 4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일 경우, 가결된 것으로 한다.
- ④ 총회는 효율적 의사결정을 위해 총회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사항은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2. 사업 계획 및 예산의 승인
 - 3. 사업 보고 및 결산의 승인
 - 4. 기타 시급한 사항

제14조 (이사회)

-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및 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그 의장이 되며, 안전이 발생하여 승인이 필요할 경우 소집한다. 단, 구성원의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장은 즉시 소집하여야 한다.
-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 1.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의 심사
 - 2. 총회에 상정할 의안이 심사
 - 3. 정관의 시행을 위한 운영규칙의 제정 및 개정
 - 4.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 5. 기타 업무상 중요사항
- ③ 이사회 의결은 구성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일 경우, 의장의 결정에 의한다.

제15조 (운영위원회)

- ①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그 의장이 되며, 안전이 발생하여 승인이 필요할 경우 소집한다. 단, 구성원의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장은 즉시 소집하여야 한다.
- ② 운영위원회는 이사회에서 논의할 사항들을 사전에 분석, 정리하여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 ③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경우, 구성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일 경우, 의장의 결정에 의한다. 운영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이 이사회 혹은 총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즉시 효력이 정지된다.

제16조 (각 집행위원회)

- ① 효율적인 사업집행을 위하여 총무위원회, 학술위원회, 사업위원회, 편집위원회 등의 집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각 위원회는 담당 상임이사와 약간 명의 이사로 구성하며, 담당 상임이사가 위원장이 되어 필요한 위원회를 소집한다.
- ③ 위원은 각 집행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 ④ 총무위원회는 회원 관리, 예산 및 회계 관리, 본회 및 분과위원회 지원, 임원선출,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 ⑤ 학술위원회는 국내학술위원회와 국제학술위원회로 나누어 운영할 수 있으며, 정기적인 학술대회의 계획 및 개최, 학술 사업의 계획 및 추진, 학술 및 연구용역의 유치, 학술정보의 수집 및 제공, 지회 및 분과 연구회의 학술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 ⑥ 사업위원회는 학회 활동의 홍보, 국내외 유관학회와의 교류, 회원가입 및 찬조금 유치, 대정부 정책 활동, 산업발전, 수출, 학회 주관의 프로젝트 및 사업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 ⑦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및 논문지에 투고되는 원고 혹은 논문의 심사, 편집, 출간 등과 관련된 업무를 관장한다.

제17조 (각 특별위원회)

- ① 본회는 특수한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한시적으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특별위원회는 위원장과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고 회장이 임명한다.
- ④ 특별위원회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 ⑤ 특별위원회는 연구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자체적으로 논문지 발간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8조 (사무국)

- ① 본회에는 직무수행을 담당할 사무국장 1명과 10인 이내의 직원을 둘 수 있다.
- ② 사무국장과 직원은 별도의 규정에 따라 회장이 임명하며, 이들에 대한 보수도 동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제 5 장 지 회

제19조 (지회 설립)

본회는 지방회원의 학회활동을 촉진하고 지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지회

를 둘 수 있으며, 사무 공간과 인력 및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 (명칭과 소재지)

- ① 지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융합기술연구학회 00지회”로 한다.
- ② 지회는 각 광역시 혹은 도 단위로 하나를 둘 수 있으나,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제21조 (구성)

- ① 지회의 구성은 정회원 20명 이상으로 한다.
- ② 지회가 각 도 및 광역시 단위에 2곳 이상이 있는 경우, 한 곳을 대표로 정하도록 한다.

제22조 (설립 절차)

- ① 지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회원은 정관에 규정된 목적의 범위 내에서 회칙을 제정하고 회원명부를 첨부하여 학회장에게 그 설립을 신청한다.
- ② 학회장은 이를 운영위원회에 발의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며,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 (운영)

- ① 지회는 자체 선거로 지회장 및 임원을 선출할 수 있으며, 지회장은 회원, 임원, 1년간의 활동사항 등을 학회 정기총회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하고 정기총회에 구두로 보고하여야 한다.
- ② 회장과 운영위원회는 필요시 지회장에게 그 활동사항을 보고 또는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지회장은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 6 장 재 정

제24조 (경비)

- ① 본 회의 경비는 회원의 입회비, 연회비, 사업수익금,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 ② 입회비 및 연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제25조 (출납)

- ① 본 회의 출납은 회장이 집행하되, 외부 회계사무소를 통해 관리한다.
- ② 운영경비의 지출기준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제26조 (회계 기준)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7조 (특별회계)

- ① 학회의 장기발전을 위한 학회발전기금, 산업발전을 위한 산업발전기금, 학술상, 공로상 시상을 위한 기금, 국가·공공기관·지자체 주관 프로젝트 운영비 및 간접비 등은 특별회계로 운영한다.
- ② 특별회계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이들 모든 기금 및 특별회계의 지출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집행하며, 총회 및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특별회계의 운영은 특별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의한다.

제28조 (감사)

회장은 회계연도 말에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고, 감사는 이를 총회에 보고 승인을 받아야한다.

제29조 (정관 개정)

본 정관은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의 발의로 총회에 출석한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총회의 승인을 받아 개정할 수 있다.

제30조 (임의 해산)

본 회의는 총 회원 4분의 3이상의 동의를 얻어 임의 해산할 수 있다.

제31조 (재산의 구분)

본 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2조 (수입금)

본 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3조 (예산편성)

본 회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4조 (결산)

본 회의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차기 이사회 의결을 거쳐

차기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 칙

제1조 (초대회장 및 초대임원의 선출)

초대회장, 부회장 및 임원은 창립 발기총회에서 선출한다.

제2조 (보칙)

- ① 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운영규정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②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단, 회장은 이를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 (시행일)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설립허가 및 설립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후의 변경내용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